

特殊建物 時價決定 基準에 대한 考察

趙 正 守
〈特殊保險 1 部・次長〉

1. 沿革

現行 使用하고 있는 特殊建物 時
價決定基準額表 (以下 基準額表라
한다)는 火災로 因한 人命 및 財產
上의 損失을 預방하고 迅速한 災害
復舊와 人命 被害에 對한 適正한
補償을 함으로서 國民生活의 安定
에 審慮하게 함을 目的으로 1973년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
에 關한 法律”이 施行됨에 따라
特殊建物의 所有主는 義務의 으로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以下
特約付火災保險이라 한다)에 加入
토록 하는 規定(法 第 5 條)과 加入
對象 特殊建物의 特約付火災保險加
入時의 保險金額은 時價 金額으로
하여야 한다(法 第 8 條)는 規定에
依據 時價決定을 하기 위한 일환책
으로 1973년 6월 6일 制定, 最初로
適用하게 되었으며 1974년 4월 10
일에 1次, 1975년 4월 26일에 2次,
1977년 3월 30일 3次로 改正하여
現在에 이르는 동안에 利用上의 諸
般問題 및 矛盾點들을 補完하여 有
된다.

災保險協會 및 鑑定院 關係者들과
數次의 協議를 거쳐 改正 方向 및
基本指針을 마련하여 1976년 8월에
서울 工科大學 附設 研究所에 用役
을 依賴하여 同 結果를 數次에 걸
쳐 檢討 수정乃至 補完 完成하여
關係當局의 承認을 받아 1977년
4月 1日 부터 施行하게 되었다.

2. 時價決定基準額表의 必要性

(1) 必要性

特殊建物時價를決定하는데 있어
이徵稅資料 또는鑑定評價資料를
使用하지 않고別度로基準額表를
만들어 사용하는理由는商法 및
保險約款에「保險會社가補償한損
害額은 그損害가發生한 때와
同에 있어서의保險의目的의價額에
따라決定한다」라고規定되어 있고
따라서保險金額이保險價額에未
達하는 경우에는一部保險으로保
險會社가補償하는金額은保險金
額의保險價額에대한比率에따라
算定되기 때문에被保險者로서는
損害額의全額을補償받지 못하는
結果가된다.

한국 現行 基準類表는 1976년 火

또한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超過保險으로 保險에 依한 不當利得禁止의 大原則下에 超過하는 金額은 無効가 되기 때문에 被保險者로서는 不必要한 保險料를 負擔하는 結果가 된다.

따라서 特殊建物의 保險價額은 現時價를 保險價額으로 하고 있는 限 保險金額과 保險價額은 相應하여 하므로 時價 基準額表를 別途로 만들어야 하는 當爲性이 있는 것이다.

(2) 法的 根據

“火災로 因한 災害 补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 第8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依據 特殊建物의 時價는 特殊建物 時價 決定 基準額表에 依한 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決定하도록 하고 同法 施行規則 第2條의 第1項은 “法 第8條 第1項 第1號에 規定된 特殊建物의 時價는 別表의 特殊建物 時價 決定 基準額表에 依한 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決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3. 時價決定基準額表의 作成 概要

(1) 作成概要

特殊建物의 時價를 決定하는 것 이 그렇게 容易한 일은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契約을 通하여 體驗한 바 있다. 따라서 同 基準額表를 作成하는데 있어서 수 많은 建物을 標本(sample)으로 選定하여 分析 檢討한 統計에 依據 作成되어야 바람직 하나 그러한 建物들의 建築當時의 工事條件 施工者の 能力 等 工事費를 左右하는 諸般 要因을 일일이 確認할 수가 없고 正確한 統計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同基準額을 算出하는데 있어서는

基準建物의 用途, 規模, 構造, 型式, 主要內外部마감재료 및 基本設備等을 假定하고 또한 工事當時의 建築資材價格 労賃 等에 따라 建築工事費에 多은 差異가 發生하도록 之를 考慮하여 本基準額表는 各 建物의 中級과一般的으로 使用되는 材料를 假定하고 이에 따라 上中下級으로 建物을 定하였으며 普遍의 工程 및 工法等을 基準(standard)으로 하여 工事가 이루어졌다는 假定下에, 材料費 및 人件費는 物價時勢表 및 基準품셈표를 適用하여 作成되었으며 可能한 用途, 規模 및 形態에 있어서 建物에 알맞게 適用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本 基準額表는 多量의 內譯書를 作成하고 附帶 設備의 種類 建物의 用途에 따른 細分化로 價額決定의 正確性을 期하도록 하였으며 對象 建物과 算出 基準 建物의 마감材料가 다를 경우 對象 建物의 一位代價表를 適用하여 보다 더 實際 工事費에 近似한 費用을 算出할 수 있게 하였고 使用 部別으로 物價의 變動에 따라 一位代價表에 變動 物價를 代入 시킴으로서 容易하게 變動된 建物 價額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本 基準額表는 建物에 對한 時價 基準額을 可能한 範圍내에서 標準화할 수 있도록 하여 基準 建物과 相異한 建物에 對해서는 適用 如何에 따라서 有効 適切하게 使用할 수 있게 하였다. 품셈은 建設部 發行의 建設工事 標準품셈표를 基準으로 하였으며 物價는 1876년 9월을 基準으로 勞賃은 政府 建設 勞賃 單價를 適用하였다.

한편 改正前의 基準額表와의 差

異點을 간단히 살펴 보면

첫째, 改正前 基準額表는 料率書上의 危險等級에 依한 各 規定에 適用하도록 調整하여 構造別 類形別로 分類되었던 것을 現行 改正 基準額表는 料率書上의 規定을 떠난 建物의 순수한 構造別 外壁形態別 規模別(層數)로 分類되었기 때문에 料率書上의 제약으로 因한 價額算定의 矛盾點을 排除함으로써 實際 建築費를 現實에 알맞게 算出할 수 있도록 한 점.

둘째, 自動火災探知機施設, 消火栓, 冷溫房機, 露天施設等一部 特殊設備를 基本 建築工事費에 一括 包含시켜坪當價額이 算定되어 있으므로 이로 因하여 現實과 大소 差異가 있어 建物所有主와 建物 時價決定에 異見이 있었던 점을 考慮 現行 時價決定 基準額表上에서는 同 特殊設備의 有無에 따라 完全히 分離시켜 別途로 加算도록 한 점.

셋째, 基本 建物 價額 算出 基礎資料를 日本의 資料를 많이 參考로 하여 作成되었기 때문에 우리 現實과는 不適合한 점이 없지 않으나 現行 基準額은 우리나라의 現在 있는 建物을 標本으로 抽出하여 算出한 만큼 現實化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넷째, 建物의 等級 基準이 모호하게 된 점을 同 基準額表上에서는 内部마감 材料 窓戶 외벽마감재료 防水 等의 程度에 따라 上中下로 각각 分類하여 建物의 程度 差異의 基準을 마련 細分化 하였으며

다섯째, 內譯書作成 根據를 28個에서 389個로 具體化 하였으며

여섯째, 一位代價表作成 方法에 있어서도 標準 품셈표에 現場 勞賃 單價를 基準으로 한 점 等을 들 수

가 있다.

(2) 適用 [建物의 類別 分類]

同 基準額表의 適用은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 第2條 및 同法 行使令 第2條에 規定한 特殊建物에 限하여 適用하도록 하였다.

한편 適用 建物의 分類는 事務室, 호텔, 어관, 아파트, 百貨店, 屋內 購賣場, 병원·의원·진료소, 학교, 駐車場, 촬영소·스튜디오, 料理店·유홍음식점, 체육관·강당, 영화관·극장, 市場 및 工場으로 分類하였다.

(3) 建物의 上 中 下 分類 基準

同 基準額表는 建物의 用途別 構造別 및 規模別 建物의 바닥, 壁, 천정, 치장設備等의 程度에 따라 上 中 下로 區分하여 그一般的의 建物을 基準으로 하였으며 主要 著種別 分類 基準은 別表 2와 같이 分類 되었다.

(4) 建物의 價額 設定 基準

特殊建物의 時價 設定은 基本建物 價額과 特殊設備 價額으로 區分 분離하였으며 基本建物 價額은 純工事費에 基礎 設備인 排水 設備, 電氣 一般設備, 排管設備, 照明 및 피뢰침 等을 包含한 것이며 그以外의 建物 設備인 冷·暖房設備, 승강기, 消火設備 및 其他特殊設備는 別途로 補正하도록 하였다.

한편 同 基準額表는 建物의 新築單價를 基準으로 하여 設定되었으며 當該建物의 建築設計 要領 建築資材의 優劣施工 方法의 差異 使用期間 및 建物의 管理 狀態 等에 따라 10%範圍內에서 加減할 수 있도록 하였다.

同 加減의 範圍를 10%로 決定한

것은 上 中 下로 細分化 함에 따른 各 級別 平均價額의 差異 즉 上限線(upper class limit)과 下限線(lower class limit)의 갭(gap)이 約 10% 以內 이므로 同範圍를 超過하여 加減할 경우에는 上 中 下로 區分한 意義가 없으므로 同範圍 以上을 加減하자 할 때에는 반드시 事前 充分한 資料蒐集에 依據, 檢討가 先行되어야 한다.

(5) 特殊設備의 適用 範圍

建物價額 算定中 特殊設備를 別途로 加算하도록 함에 따른 그 內容을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a) 冷·暖房 및 衛生設備

- ① 暖房設備
- ② 방열기에 依한 暖房
- ④ 탁트(ducter)에 依한 暖房
- ② 冷·暖房設備
- ⑤ 全 탁트 方式

(+) 탁트 fancoil unit 方式

(+) fancoil unit 方式

(+) 금항설비

(+) 消火設備

- ① 自動 탐지기
- ② 屋內 消火栓 設備
- ③ 스프링 끌라 設備
- ④ 포·분말 설비
- ⑤ CO₂ 消火設備

(+) 電氣設備

- ① 發電設備
- ② 變電設備
- ③ 電話 交換設備

(+) 運送設備

- ① 승강기(승객, 화물용)
- ② Car lift
- ③ Dumb waiter
- ④ 에스카레이터

한편 特殊建物 種別 附帶設備를 建築工事費와 參考로 살펴 보면 다

〈표 1〉 建物 工事費와 附帶設備 比率

설비별 용도별	전기설비	급배수위생	냉·온방	승강기	계
공 공 건 물	19%	11%	16%	10%	56%
은 행	13	9	16	7	45
사 무 실	18	9	24	12	63
병 원	18	18	21	12	69
학 교	9	10	12	6	37
여 관	13	14	20	7	54
공 장	18	11	9	—	33

음과 같다.

(6) 特殊構造에 對한 別途 補正

同 基準額表上의 用途 및 構造 區分에 表示되어 있지 않은 建物은 類似한 用途 및 構造에 準用하여 基準額表에 適用하며 基準額表上에 適用할 수 없는 建物은 別途로 그 價額을 算定 補正하여야 한다. 즉 同一 建物內에 一部가 보링장 싸릉 캐마례 等의 여타 著種이 있을 경우 그 著種의 特殊性에 따라 그 使

用 部分의 特殊設備 및 內裝材 等의 價額은 别途로 加算되어야 한다. 한편 主要 建物構造를 살펴 보면

(가) 建物의 基礎는 地下에 있으므로 그 構造 및 施工 狀態를 判別하기 困難하여 그 地帶의 地質 및 本建物의 構造 層數 等을 考慮하여야 할 것이며 이 部分에 높은 工事費가 所要 되었다고 判斷될 경우에는 别途로 調査하여 補正하여야 한다. 鐵筋 콩크리트造 또는 組織造

의 경우에는 大體로 建築工事費의 8%乃至 12%程度를 點有한다.

(나) 構造體部分인 기둥, 보, 壁體, 지붕等이 特殊한 使用目的에 依하여 特別히 補強되었거나 高級材料, 斷熱材等을 使用하였을 경우 또는 層高가 通常 높이 보다 顯著하게 높을 경우는 이 부분을 別途調查 補正하여야 한다. 따라서 工場 建物의 경우를 實例로 들면 벽체 높이가 5m~9m 미만은 12% 9m以上은 14%를 用途上 特殊壁構造는 別途로 補正하되 壁體의 工事費는 全體 工事費의 約 20% 程度를 推定하도록 되어 있다. 一般의으로 鐵筋 콘크리트造의 경우에는 骨造部分의 建築工事費에 對한 比率은 35% 내지 40% 程度로 推算하고 있으며 壁體部分은 治壯部分을 包含하여 12%~15% 程度로 推定하고 있다.

(다) 窓戶部分은 窓戶가 特殊材料(二重防彈 유리, 스텐레스 기타 高級建材等) 또는 特殊裝置가 되어 있는 경우 別途로 調査하여 補正할 수 있으며 建築工事費의 約 9%~11%를 推定한다.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建物構造別 工事比率를 日本 建物見積현황실태통계표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으나 日本의 特殊性을 考慮한다면 우리

나라 建物에 適用 하기에는 充分한 事前 檢討가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思料된다.

4. 建物의 調査

建物의 評價는 多く 가지의 調査活動을 通하여 展開되는 것이 特性이다.

調査活動이 正確하게 處理되었는가에 따라 建物評價의 正確度(accuracy)가 決定 지어진다. 이와 같이 調査活動은 主로 技術的인 測面이 重要한 作用을 하게 된다. 建物評價에는 資料의 審集整理와 建物狀態調查로 나눌 수 있으며 調査資料는 確認資料, 要因資料, 및 實例資料로 分類할 수 있다.

(1) 確認資料

確認資料는 公簿調查資料와 有形의인 物의 確認資料 및 無形의인 權利의 態樣을 確認하는 경우에 必要한 資料이다. 公簿에는 登記簿謄本, 臺帳謄本, 各種圖面, 地籍公簿, 債權에 債務에 關한 契約書, 物權 行爲에 關한 契約書, 債料等의 領收證 사본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權利의 態樣을 分析하기 爲하여 所有權 其他 權利事項을 調査하는 수도 있으나 物의 確認이 重要하며 建物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한 個別的 要因인 面積 建物의 높이 構造,

設計, 設備 등의 良不 良 施工의 質과 量等에 關하여 明確히 調査되어야 하며 따라서 檢査의 狀態調查는 構造・級數에 關한 調査와 危險調查로 區分 分離 實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뒷 檢査를 할 수 있는 方法으로서 特殊建物에 對한 安全點檢 實施 때에 建物에 關한 充分한 資料를 審集하여 建物現況 및 時價補助 카드를 一般物件과 工場物件을 別表 樣式에 依據 契約 締結時에 擔當者가 事前에 利用할 수 있게끔 契約部署로 通報하고 있는 것이다.

(2) 要因資料

要因資料는 價格形成에 있어서 一般資料와 個別資料로 區分할 수 있으며 一般資料에는 價格形成 要因에 一般的인 諸要因으로 評價活動에 영향을 주는 社會的 經濟的行政의 要因資料이다. 個別資料에는 對象物件의 個別의 特性과 地域要因 等이 比較 檢討할 수 있는 資料로서 價格形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特殊建物은 時價를 保險金額으로 하고 있는 만큼 同 資料는 適用하지 않게 作用을 하고 있는 點을 고려 特別法施行規則에서 地域差等을 감안 10%의 範圍內에서 加減할 수 있게 하였다.

(3) 實例資料

實例資料는 評價方法에 따라 必要한 資料로서 去來事例 貸貸事例 收益事例 建設事例 評價先例等 參考 資料로서 對象建物에 따라 適用할 수 있는 實例資料를 審集整理하여야 한다.

5. 基準額表上의 諸稅 公課金

同 基準額表上의 基準額은 諸

<표 2> 建物構造別工事費比率

구조별		금 조(%)	벽 체(%)	창 호(%)
공	공전물	40	15	11
은	행	30	15	17
사	부실	37	13	11
명	원	36	13	9
학	교	40	12	9
호	민여관	34	15	12
공	광	45	8	8
평	규	37	13	11

稅公課金雜費를 加算한 金額이
包含되어 있다.

구 분	비 율(%)
建築工事費	20
機械設備工事	15
電氣設備工事	20

6. 機械設備 및 附帶裝置 에 대한 評價

(1) 根 據

機械設備 및 附帶裝置에 대한 評價 方法은 特別法 施行規則 第 2 條의 2(特殊建物 時價 決定 方法)에

依據 “法人稅法 施行令의 規定에
依한 減價率을 하고 都賣物價上
昇率을 참작하여 算定한 價額을 時
價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가) 適用方法

$$\text{現存價額} = \text{取得價額} - \text{減價額}$$
$$\text{減價額} = \text{取得價額} \times \text{總減價率}$$

總減價率 = 經年減價率 × 經過年數
따라서 위의 方法에 依하여 現存
價額을 算出하여 取得 年度부터 評
價 時點까지의 物價 上昇率을 考慮
算定한 金額이 時價로 된다.

(나) 取得價額의 把握

評價하고자 하는 當該設備에 對한

구입 당시의 金額을 取得價額으로
하며 同 價額에는 同 施設에 對한
그 價額은 물론 登錄稅 取得稅 其他
附帶設備費用을 包含시켜야 하며 自
己建設 製作等에 依하여 取得한 機
械設備는 原材料費, 勞賃費, 製作
等에 依하여 取得한 機械設備는 原
材料費, 勞賃費, 運賃, 하역비, 수
수료, 公課金(登錄稅 取得稅), 設置
費, 其他 附帶 費用의 合計 金額을
取得 時當時의 正常價額으로 한다.

(다) 物價指數

物價 상승율은 韓國銀行의 調査
한 都賣物價指數를 말한다. 그러나

<토 막 소식>

日本, 主要빌딩의 火災豫防實態

—2割이 「스프링클러」施設 안해—

◇ 고층빌딩의 火災는 가끔 피해의 大型화를 초래
한다. 日本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건물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화 시켰다. 이에 대한 소식을
外信을 통해 알아본다. <編輯者註> ◇

일본은 지난 74년 消防法 개정으로 기존건물에도
義務化된 「스프링클러」 설치 시한이 3월 말로써 끝
났다. 3년간의 시설개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빌딩은 20%나 되
었다.

5년전 1백 3명의 사망자를 내었던 大阪 千日前
백화점火災, 1백 18명의 熊本 大洋백화점火災(73년
등의 교훈이 74년 消防法을 개정케 하였으며 백화
점은 물론 모든 混用 빌딩에 「스프링클러」 설치의
의무화가 주어진 것.

섭씨 72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噴水器
인 「스프링클러」는 「消火에 만족」이라고 하지만
난점은 配管工事を 포함한 설치비용이 평당 4만圓
이나 소요되며 특히 기존건물은 천장부분을 전부
헐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해야만 한다. 빌딩

의 일부에 극장, 식당등이 있을 경우 빌딩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 막
대한 비용이 필요하는데에서 일부 빌딩은 廢業
을 전제로써 시설개수공사를 기피하는 곳도 있다.

日本大學의 講堂은 입학·졸업식 이외에 프로페
슬링 등 일반 공개장소로도 사용되어왔는데 일반공
개를 앞으로 계속하려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으
로 1억圓을 새로이 투입하여야 하므로 이달부터 일
반 공개는 중지 시켰다.

유예기한을 2개월 남겨둔 지난 1월말 현재의 조
사는 東京都내 대상빌딩중 공사완료된 合格빌딩은
불과 15%.

이달부터 消防法違反이 된 未着工빌딩은 80棟으
로 점계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新宿國際地館등 5棟
의 대형빌딩도 포함되어 있다.

東京消防廳은 지난 1일을 기해 각 소방서를 통
해 시설개수를 종용하는 한편 당초부터 공사계획
을 지연시킨 20개棟은 소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강
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